

2007. 1.

수 신 : 제천시의회의장

제 목 :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발의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2회
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불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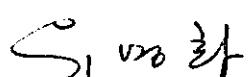
불 임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발의자 : 김명섭 의원 (서명~~또는~~날인)

외 2인

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

의원성명	서명 또는 날인	비고
성명중		
정명성		
정명재		

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122
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7. 1.
발의자 : 김봉수 의원외 2인

1. 제안이유

제천시에서 「팀」 제를 도입하면서 「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」를 개정 2007. 1. 26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계 「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2조(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))

1. 부시장
2. 시장의 보조기관중 본부장, 팀장
3. 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
4.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직속기관은 시 본청의 팀장, 사업소는 시 본청의 5급상당 팀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

3. 관련법규

- 해당없음

- 붙임 1.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 끝.

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))

1. 부시장
2. 시장의 보조기관중 본부장, 팀장
3. 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
4.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직속기관은 시 본청의 팀장, 사업소는 시 본청의 5급상당 팀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범위) 생략</p> <p>1. (성략)</p> <p>2. 시장의 보조기관중 <u>국장·실장 및 과장급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장·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자</p>	<p>제2조(범위) 현행과 같음</p> <p>1. 현행과 같음</p> <p>2. <u>본부장·팀장</u></p> <p>3. 현행과 같음</p> <p>4. <u>직속기관은 시 본청의 팀장, 사업소는 시 본청의 5급상당 팀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</u></p>